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14
----------	-----

2016.12.21.(수)
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9일

-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진형)

가. 제안사유
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의 취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포상추천을 위한 작성서식 개정
 - 공적조서 양식 중 주민등록번호 작성 부분을 생년월일 작성으로 개정

3. 검토보고 요지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주요 내용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514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11월 2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포상추천을 위한 작성서식 개정
 - 공적조서 양식 중 주민등록번호 작성 부분을 생년월일 작성으로 개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 적 조 서

(1)성 명					(한 자)
(2)생년월일			(3)군번 (군인의 경우)		
(4)성 별			(5)국적 (외국인의 경우)		
(6)주 소					
(7)직 업			(8)소 속		
(9)직 급		(10)직 위		(11)대외직명	
(12)근무기간			(13)공적분야		
(14)공적요지(50자 내외)					
(15) 추천훈격			(16) 추천순위		
조 사 자					
(17)소 속			(18)직 위		
(19)직 급			(20)성 명		
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
추 천 관					
년 월 일 (인)					

주요 학 력 및 경 력

(21) 년 월 일	(22) 이 력	(23) 년 월 일	(24) 이 력

과거 표창기록 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

(25) 년 월 일	(26) 내 용	(27) 년 월 일	(28) 내 용

(29) 공 적 사 항

관련법령 발췌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- 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